

화 학 물 질 관 리 법

(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2015. 1



목 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7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7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9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12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13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14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16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17	제1조(목적) 1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1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9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12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16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13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14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14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16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 18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0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21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22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등) ... 24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25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 27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28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허가 등) · 30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33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36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37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38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 41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27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31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34 제11조(환각물질) 37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22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23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 24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 24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25 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27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 28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 30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33 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34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36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38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40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41 제22조(검사기관 등) 42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46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48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등) 43 제24조(안전진단 등) 44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46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48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49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50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50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52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53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54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55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55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57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58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60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60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58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60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6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63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63	제35조(안전교육기관) 63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 66		제36조(안전교육계획) 64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68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65
제36조(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72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72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시 조치사항) 66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74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2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67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76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73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72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75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76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78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78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77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79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81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78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79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79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80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8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82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83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84 제46조(조치명령 등) 86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87 제6장 보 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7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89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93 제51조(청문) 93 제52조(자료의 보호) 94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95 제54조(수수료) 96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97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1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85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87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88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94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97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10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82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83 제51조(조치명령 등) 86 제6장 보 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87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89 제54조(출입·검사) 90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92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93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94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94 제59조(수수료) 96 제60조(보고) 97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7조(벌칙) 101		
제58조(벌칙) 102		
제59조(벌칙) 103		
제60조(벌칙) 104		
제61조(벌칙) 104		
제62조(벌칙) 105		
제63조(양벌규정) 106		
제64조(과태료) 106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06	
	제25조(규제의 재검토) 108	제61조(규제의 재검토) 108
부 칙 〈법률 제11862호, 2013.6.4.〉 108	부 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12.9.〉 108	부 칙 〈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108

■ 시행령 별표 125
■ 시행규칙 별표 129
■ 시행규칙 별지서식 18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1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소속 전문가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법」 제59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함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 보호를 요청하려면 제5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명서에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채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 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	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해당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및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	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V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 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공정위험성 및 사고가능성에 따라 고위험도·중위험도 및 저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여부 등을 적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조정 필요사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현장 경력 또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4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으로 한다.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표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당 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정 위험성 분석자료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유출·누출 시나리오가 변경된 경우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		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 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 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 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 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 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 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 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 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 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을의 경우에 한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수 5,000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미만 인 경우: 1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 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경우: 2명 다.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인 경우: 3명 라.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인 경우: 4명 마.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0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 2. 협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를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⑤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		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 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1.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营业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준하는 절차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동 활용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안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 중지 등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별표 10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확인 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에 따른 사항만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검토결과서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적고 수정·보완 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 위해관리계획서의 세부적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고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고지서 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 날인 3.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방식으로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 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6조(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4조(출입·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 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 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5. 장외영향평가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 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 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 인하려는 경우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는 경우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사 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 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보호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 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등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 진단 관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수리 등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 정지 명령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9조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지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매하거나 제공한 자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1862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2015년 1월 1일 2.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부 칙 〈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	제2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 해제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받은 요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 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서를 갱신·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로 한다.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⑯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⑮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⑯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61조제2호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제11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1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하며, 제89조의3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 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로 하고, 제92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한다.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 사고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tr><td>2. 유해 화학 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td><td>「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 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td></tr></table>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⑯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2. 유해 화학 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 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2. 유해 화학 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 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한다. 제68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143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⑱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⑲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 . ⑳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1) 및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휴업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이나,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 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 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 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마.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600	800	1,000
바.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 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6호	600	800	1,000
사.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7호	600	8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 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 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180	240	300
자.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8호	600	800	1,000
차.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9호	600	800	1,000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600	800	1,000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1호	600	800	1,000
파.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180	240	300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2.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다만,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 것
5.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할 것
6.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7. 열, 스파크, 불꽃 등의 점화원을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제거할 것
8.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할 것. 다만,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화재, 폭발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10.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보관·저장 및 사용 장소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
11.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 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12. 유해화학물질이 묻어있는 표면에 용접을 하지 말 것. 다만, 화기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열,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시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14.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한 가스의 존재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15.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16. 폭발성 물질과 같이 불안정한 물질은 폭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17.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18.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상태로 보관할 것
19. 용기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 것
20.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는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1.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운송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뚜껑을 포함하여 용기의 재질이 유해화학물질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23.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24.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추 것
25.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 또는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26. 유해화학물질이 음식물이나 가축사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27.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과 함께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28.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
29.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30.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 말 것
31.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32.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3. 앞서 저장한 화학물질과 상이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탱크 로리, 저장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폐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3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35.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36.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호퍼나 컨베이어, 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에는 낙하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낙하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때에는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분진 포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7.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38. 인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할 것
39. 인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은 자기발열성 및 자기반응성물질과 함께 보관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
40. 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41.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42.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교반, 혼합, 분쇄, 선별, 여과,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43.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44.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할 것
45.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46.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비고: 위 기준 외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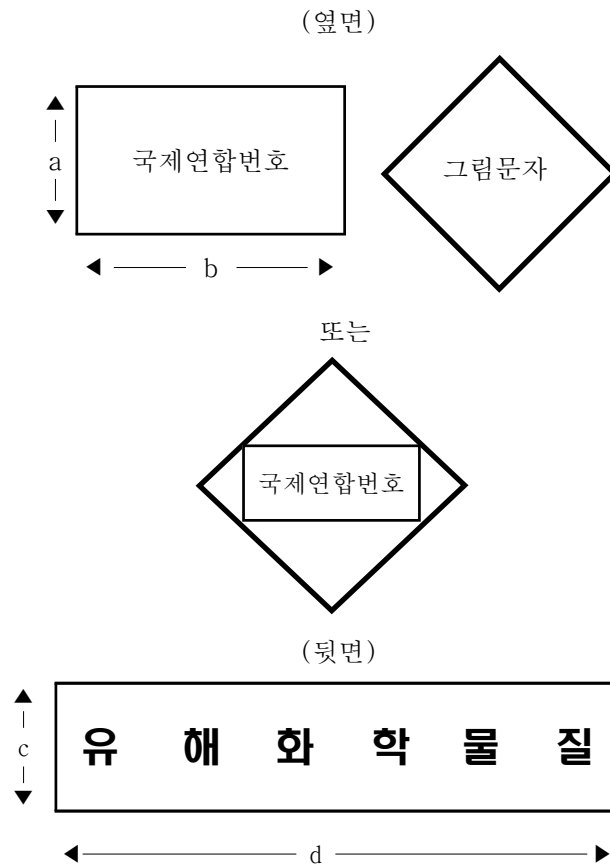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cm 이상, $a=10\text{cm}$ 이상, $b=25\text{cm}$ 이상, $c=20\sim 30\text{cm}$, $d=80\sim 100\text{cm}$ 이어야 한다. 단, 4톤 이하 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cm 이상, $c=12\text{cm}$ 이상, $d=50\text{cm}$ 이상으로 한다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그림문자: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법」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2개의 물질까지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되,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하여야 한다.

6) 표시위치: 양 옆면과 뒷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하여야 한다.

7) 유해·위험성 우선순위

가) 방사성 물질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다) 가스류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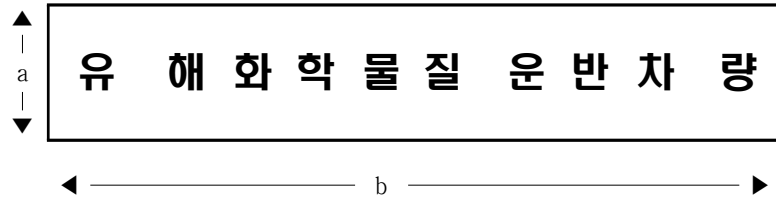
바) 자연 발화성 물질

사) 유기과산화물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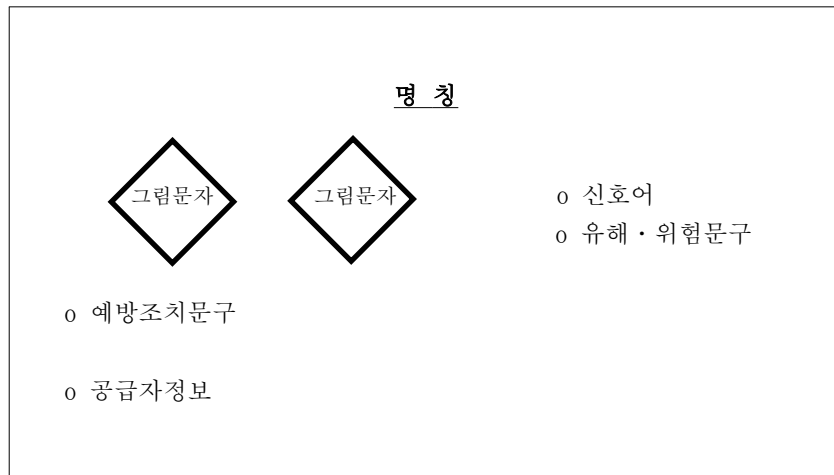


2) 양식크기: 앞면에 가로 $b = 30 \sim 80\text{cm}$, 세로 $a = 10 \sim 20\text{cm}$ 이어야 한다.

3.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단일 용기·포장

1) 양식



2) 크기

가) 전체크기

용기·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용기·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cm ²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cm ²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cm ² 이상
500ℓ 이상	450 cm ² 이상

나) 그림문자 크기: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색상: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내부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중 용기·포장

- 1) 외부 용기·포장이 운반을 위한 용기·포장이 아닌 경우 외부 용기·포장과 내부 용기·포장에는 가목에 따른 용기·포장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외부 용기·포장이 운반을 위한 용기·포장인 경우 내부 용기·포장에는 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고, 외부 용기·포장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용기·포장의 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부 용기·포장의 그림문자는 외부 용기·포장의 그림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교

- 1) 단일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용기·포장의 표시를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 2) 단일 용기·포장에 운송그림문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2. 물리적 위험성

2.1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는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2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3 “인화성 에어로졸”은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4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2.5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하며,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6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7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8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9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2.10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2.11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1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13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14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15 “유기과산화물”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하며,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2.16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3. 건강 유해성

3.1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3.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3.3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3.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3.5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3.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3.7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하나와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를 통한)으로 분류한다.

3.8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3.9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3.10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4. 환경 유해성

4.1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급성 구분 및 4개의 만성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4.2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5. 추가적인 유해성

[별표 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 1)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은 물질안전자료(MSDS), 개별시설 및 장치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저장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작성한다.
- 3) 유해성 정보는 일반정보(물질명, CAS 번호, 조성농도),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1) 취급시설의 목록은 동력기계 목록, 장치 및 설비, 배관 및 개스킷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취급시설의 명세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가) 동력기계번호, 동력기계명, 주요재질 분류기호, 취급량 혹은 처리 능력, 방호장치종류 등 동력기계 정보에 관한 사항
 - 나) 취급 혹은 저장량,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개스킷 재질, 용접여부 등 장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다)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사용 재질 분류기호, 개스킷 재질 등 배관 및 개스킷에 관한 사항
- 3)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가) 운전조건, 반응조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등 공정개요에 관한 사항
 - 나) 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기타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자료(간급차단밸브 등) 등 주요 기기의 취급·저장량을 포함한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다)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 1) 취급시설 입지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등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에 관한 사항

나) 기기의 설치 높이,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리 등 설비배치도 (Plot-Plan)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는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등 시설물의 위치도 및 명세, 주민분포, 자연보호구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기상 정보

기상정보는 월별 평균 온도, 습도, 대기안정도, 풍향, 풍속과 지표면의 굴곡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장외 평가정보

가. 공정 위험성 분석

공정 위험성 분석은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중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작성한다.

나.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1) 사고 시나리오는 기본 평가정보, 공정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사고 발생 시나리오(안전성 확보 방안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를 분석하여 작성한다.

2) 사고 가능성은 동일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외 사고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3) 위험도는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사고 가능성을 곱하여 작성한다.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는 위험도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건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의 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라. 안전성 확보 방안

안전성 확보 방안은 다목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을 작성한다.

3. 타법과의 관계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등록, 허가와 관련된 타 법령 및 규제 내용을 작성한다.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대상과 중복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제1호가목·나목,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과 제1호다목·라목, 제2호나목·다목·라목, 제3호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제2호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이거나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3)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 4)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 5)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거나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6)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 나)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 다)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 7)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8)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9)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 10)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cm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 배관, 밸브

-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4)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별 개스킷의 재질, 두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5) 배관은 수송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

이라 한다)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밸브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가)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등은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7) 배관에 걸리는 최대사용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8)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 9)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코팅 및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물질의 누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물질의 누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10)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 제조·사용 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정변위 압축기
 - 다)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마) 그 밖의 제조·사용 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 12)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3)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사용 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열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 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4) 유해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제조·사용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15) 안전밸브등은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16)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7) 안전밸브등은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나)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압력조절밸브(구 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마)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바)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18)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사고예방

1) 유해화학물질의 감압설비와 그 물질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긴급 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그 배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적절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사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다)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사) 기타 가열·냉각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차단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유해화학물질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라)의 파열판은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다)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라) 파열판
-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1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 가) 접지에 의한 방법
 -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6)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밸브·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17)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8)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9) 유해화학물질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화학물질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에서 인화성 물질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 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인화성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취급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2)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3)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가) 배출물질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설비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마)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24)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 다)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하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전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마)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 구조로 설치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 또는 CCTV를 둘 것
- 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규모 이상의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물질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 또는 CCTV를 갖추출 것
- 아)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할 것
- 자)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할 것
- 2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2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1)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가스·증기·분진 상태로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1) 환기는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할 것
-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미만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 라)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8)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의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그 저장설비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 2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나 보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운 이후로서 기체상 물질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0) 유해화학물질 소분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피해저감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시설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된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분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2)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나)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다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1)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다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마)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다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출설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6)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히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7)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다)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마) 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에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할 것

바)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사)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

8)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9)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탈의실·긴급세척시설 및 작업복 경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0) 배출시설 및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등 피해저감시설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기준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급시설에 대한 상세한 안전관리 지침서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2.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 1) 단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8m 미만으로 하고 그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에 한한다)이고 출입구에 감충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2)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3)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 위험이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감충방화문 또는 을충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감충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 6)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로서 지붕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바닥이 지면보다 높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일 때에는 집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출입구의 턱 높이는 당해 실내저장·보관설비(실내 저장·보관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실내 저장·보관시설로부

터 유출된 물질이 시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8)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구조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9) 실내 저장·보관 설비와 벽과의 사이 및 설비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실내 저장·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나)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 1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 나)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 다)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 12)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13) 다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각층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는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14) 다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 15) 다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2층 이상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관·밸브

- 1)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의 배관·밸브기준과 같다.

다. 사고예방

- 1) 저장·보관 설비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저장·보관시설에는 물질이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저장·보관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시 물질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보관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5) 저장·보관시설에는 누출된 물질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저장·보관 설비는 부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 8) 저장·보관시설에는 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 해당 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유출·누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9) 저장·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 저장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라)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마) 저장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바)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보관시설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 11) 저장·보관 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연성물질을 방출한 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 12)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저장·보관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13) 실내 저장·보관 시설의 긴급차단장치에 부착된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에서 저장·보관 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 14) 저장·보관 설비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등이 없고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15) 압력계는 압력계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6)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보관시설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보관시설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물질의 증기를 외부로 안전하게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8)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보관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 온도 상승으로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은 발화 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시설 구조를 갖추거나 다음의 기준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나)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 21) 저장·보관시설은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차단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2) 저장·보관시설은 폭발성,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증기나 가스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3)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저장·보관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4)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5)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다)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하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전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마)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 구조로 설치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 또는 CCTV를 둘 것

- 사)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 아)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할 것
 - 자)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할 것
- 26) 실내 저장·보관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 실내 저장·보관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8)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 저장설비,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29) 실내 저장·보관설비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30)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실내 저장 설비에는 물질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계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31)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실내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아니할 것
 -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 마)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 바)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집수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 사)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주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32) 실내 저장·보관설비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나)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펌프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할 것
 - 다) 펌프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 라)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마)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 바)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사) 펌프실에는 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 아) 물질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자)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수설비를 할 것.
- 33) 실내 저장·보관설비의 배수관은 시설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설비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 34)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 35)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 3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37) 실내 저장설비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1호다목12)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밸브 없는 통기관
 -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물질의 저장설비에 설치되는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실외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저장설비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이격할 것
 - (2)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 (3)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 (4)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러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 (5)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할 것
 - (6)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설비에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고,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10 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 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1) 가)(1)·(2)·(5)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38)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39)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40) 저장·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 41) 저장·보관 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책임 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4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구역 쪽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3)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44) 환기설비는 제1호다목27)다)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45) 배출 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46)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47)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8) 물과 접촉하여 위험성이 증가하는 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물이 끼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피해저감

- 1)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주위에는 물질이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저장·보관 설비와 사고피해 우려가 높은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간 사이에는 물질의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저장·보관 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물질이 누출될 경우 그 물질로 인한 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저장설비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 저장설비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히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6)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철저히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 7)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8)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나)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 다)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마) 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에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할 것
 - 바)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 사)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
- 9)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10) 배출시설 및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등 피해저감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맞게 선정해야 하고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1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2)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나)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다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다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마)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다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기준

1) 실내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를 설치한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 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보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급시설에 대한 상세한 안전관리 지침서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3.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1) 실외 저장·보관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실외 저장·보관시설은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실외 저장·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2) 실외 저장·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선반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나) 선반은 하중·풍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다)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3)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실외 저장·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지진동에 의한 관성력 또는 풍하중에 대한 응력이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옆판 또는 지주의 특정한 점에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저장·보관설비를 견고한 기초 및 지반 위에 고정하여야 한다.

5)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구조는 그 시설을 보호하고 그 시설로부터의 유해 화학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에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그 저장설비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배관·밸브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의 배관·밸브기준과 같다.

다. 사고예방

1) 저장·보관 설비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저장·보관시설에는 물질이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저장·보관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시 물질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보관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5) 저장·보관시설에는 누출된 물질이 체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저장·보관 설비는 부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인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접화원이 되지 않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 8) 저장·보관시설에는 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 해당 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유출·누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9) 저장·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저장·보관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 저장·보관 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연성물질을 방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12)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저장·보관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13)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긴급차단장치에 부착된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에서 저장·보관 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 14) 실외 저장·보관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 압력계는 압력계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6)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 저장·보관시설은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차단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8)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 저장설비,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9)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 폭발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 저장·보관시설은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증기나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저장·보관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2)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3)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다)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하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전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누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마)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 구조로 설치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 또는 CCTV를 둘 것
 - 사)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아)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할 것
 - 자)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할 것
- 24)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설비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25)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6) 실외 저장·보관 설비는 물질의 폭발 등에 의하여 설비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물질 또는 증기를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7) 실외 저장·보관 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8) 실외 저장·보관 설비의 밀판이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밀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가) 저장설비의 밀판 아래에 밀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델 것
 - 나) 저장설비의 밀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 다) 가)·나)의 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밀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 29)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에는 물질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

- 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30)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아니할 것
 -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 마)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 바)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집수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 사)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주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31) 실외 저장·보관설비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나) 펌프실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할 것
 - 다) 펌프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 라)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마)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 바)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사) 펌프실에는 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 아) 물질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자)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수설비를 할 것

- 32) 실외 저장·보관설비의 배수관은 시설의 옆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설비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밑편에 설치할 수 있다.
- 33) 부상지붕이 있는 실외저장·보관설비의 옆편 또는 부상지붕에 설치하는 설비는 지진 등에 의하여 부상지붕 또는 옆편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4) 실외 저장·보관 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 기준을 따라야 한다.
- 3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6) 금속성물질(고체물질에 한한다)의 실외 저장·보관설비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7) 저장·보관 설비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등이 없고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38) 실외 저장·보관시설에는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9)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 40)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41)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설비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1호다목 12)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 (1)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 (2)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 (3) 인화성 물질의 경우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설비에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고,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10 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 (1)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2) 가)(3)의 기준에 적합할 것
- 42)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 43) 저장·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 대장의 기록이 항상 맞도록 하여야 한다.
- 44) 저장·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는 저장·보관시설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45) 실외 저장·보관설비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설비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6) 취급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47) 취급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8) 물과 접촉하여 위해성이 증가하는 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피해저감

- 1) 실외 저장·보관설비주위에는 물질이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실외 저장·보관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사이에는 물질의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실외 저장·보관 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물질이 누출될 경우 그 물질로 인한 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실외 저장·보관설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에 대비하여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주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로 모든 물질이 유입되고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의 용량이 방류벽의 용량 이상이며 외부로의 유출·누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하나의 취급설비 주위에 설치하는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설비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고, 둘 이상의 취급설비 주위에 하나의 방류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설비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방류벽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설비 외의 설비의 방류벽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과 칸막이 독의 체적 및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나) 방류벽의 높이는 0.5m 이상으로 할 것

다) 방류벽 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라) 방류벽 내의 설치하는 실외저장·보관설비의 수는 10 이하로 할 것.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실외 저장·보관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방류벽 외면의 4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실외저장·보관설비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실외 저장·보관설비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화학사고 대응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바) 방류벽은 실외 저장·보관설비의 지름에 따라 그 저장설비의 옆판으로부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사) 방류벽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 등으로서 물질에 의한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물질이 방류벽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류벽 내의 바닥은 불침투성이고 해당 물질에 견딜 것

아)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실외저장·보관설비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류벽은 다음의 당해 시설마다 칸막이 독을 설치할 것

(1) 칸막이 독의 높이는 0.3m(방류벽 내에 설치되는 실외저장·보관설비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류벽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고, 방류벽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칸막이 독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칸막이 독의 용량은 칸막이 독 안에 설치된 저장설비 용량의 10% 이상일 것

자) 방류벽 내에는 당해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실외 저장·보관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방류벽 또는 칸막이 독에는 당해 방류벽을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방류벽 또는 칸막이 독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방류벽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류벽의 외부에 설치할 것

타)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물질을 저장하는 실외 저장·보관설비에 있어서는 밸브 등에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류벽 및 칸막이 독의 안팎에는 방류벽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6)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저장설비에는 통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 저장설비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히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8)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철저히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10) 동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나)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 다)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마) 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에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할 것
- 바)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 사)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
- 1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 12) 주변에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샤워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요인 평가를 통해 별도의 안전대책이 수립·이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기준

- 1) 실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실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 실외 저장·보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급시설의 상세한 안전관리 지침서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4.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 1) 지하 저장·보관시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설비와 지하 저장·보관시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지하 저장·보관시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mm부터 13mm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부터 20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나. 배관밸브

- 1) 지하 저장설비의 주된 밸브(액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설치된 밸브중 저장설비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한다) 및 주입구의 밸브 또는 뚜껑은 물질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 2) 지하 저장설비의 배관은 당해 설비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설비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고예방

- 1) 지하 저장설비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지하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질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물질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 나) 지하 저장설비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 2) 지하 저장·보관시설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고, 가급적 낮게 할 것
 - 나) 보호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1) 보호틀을 설비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설비를 기밀하게 접합할 것
 - (2)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3) 지하 저장설비의 주위에는 당해 설비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 다) 관은 설비전용실의 바닥 또는 설비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설비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 4) 지하 저장설비는 지면하에 설치된 지하 저장·보관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당해 저장설비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나) 당해 저장설비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 다)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저장설비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라) 당해 저장설비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마) 당해 저장설비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 5) 지하 저장설비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 6) 지하 저장설비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지하저장·보관시설의 벽이나 두께가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지하 저장설비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용량(단위 ℓ)	탱크의 최대직경(단위 mm)	강철판의 최소두께(단위 mm)
1,000 이하	1,067	3.20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75,000 초과 189,000 이하	3,657	9.27
189,000 초과	-	10.00

- 8) 지하 저장설비의 외면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저장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방청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지하 저장·보관설비에 설치하는 지하 저장설비의 외면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 (1) 저장설비의 외면에 방청도장을 할 것
 - (2) 저장설비의 외면에 방청제 및 아스팔트프라이머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및 철망의 순으로 저장설비를 피복하고, 그 표면에 두께가 2cm 이상에 이를 때까지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도장할 것
 - (3) 저장설비의 외면에 방청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에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을 두께 1cm에 이를 때까지 교대로 실시할 것
 - (4) 저장설비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를 휘감은 후 에폭시수지 또는 타르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복을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두께 2mm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장재는 수도용 강판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으로 정하는 비닐론클로스 또는 헤시안클래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저장설비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유리섬유 등을 강화재로한 강화플라스틱에 의한 피복을 두께 3mm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 나) 지하 저장·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지하 저장설비의 외면은 가)(2) 내지 (4)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 9)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설비에는 물질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구를 설치하는 지하 저장설비에 있어서는 계량구의 직하에 있는 설비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아니할 것
-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보관설비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 전극을 설치할 것
- 마)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바)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집수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 11) 지하 저장설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 12) 지하 저장설비의 펌프 또는 전동기를 지하 저장설비 안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이하 “액중펌프설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저장설비밖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제2호다목32)에 따라야 한다.
- 가) 액중펌프설비의 전동기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것
- (1) 고정자는 유해화학물질에 침투되지 아니하는 수지가 충전된 금속제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을 것
- (2) 운전 중에 고정자가 냉각되는 구조로 할 것
- (3) 전동기의 내부에 공기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나)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선은 유해화학물질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 유해화학물질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 다) 액중펌프설비는 체절운전에 의한 전동기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될 것

- 라)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전동기를 정지하는 조치가 강구될 것
- (1) 전동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 (2) 펌프의 흡입구가 노출된 경우
- 마)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1) 액중펌프설비는 지하저장설비와 플랜지접합으로 할 것
- (2) 액중펌프설비중 지하 저장설비 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호관내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이 충분한 강도가 있는 외장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설비의 상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물질의 누출을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피트내에 설치할 것
- 13) 지하 저장설비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저장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다목12)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밸브 없는 통기관
- (1) 통기관은 지하저장설비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 (2)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해당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물질 누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부분의 손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3)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 (4)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러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 (5)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6)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설비에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 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1) 가)의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3)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 (4)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14) 저장·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 대장의 기록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피해저감

지하 저장·보관시설에는 사고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에 섞인 물질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제1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보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급시설에 대한 상세한 안전관리 지침서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5.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 1) 실외에 있는 운반 저장설비(탱크로리, 컨테이너 등)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실내에 있는 운반 저장설비의 차고지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자체 보유한 모든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 4)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벤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나. 배관밸브

- 1) 운반 설비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운반 저장설비는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반차량 측 유출배관에서 긴급차단밸브(과량유출방지 밸브, 원격차단밸브 등)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Wheel type)이어야 한다.
- 3)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액체물질의 운반 설비의 주입호스(운반설비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를 말한다)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고, 그 결합금속구는 낫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주입호스의 재질과 규격 및 결합금속구의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운반설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가) 물질이 썰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 분당 토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다. 사고예방

- 1) 저장·보관시설로부터 차량에 고정된 저장설비에 물질을 이입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저장설비로부터 저장·보관시설에 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운반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55조에 따른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고, 원거리 운행 등으로 해당 차고지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한 상태로 주차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턱이나 집수시설 등이 갖추어진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 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주차장
 -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공동차고지
 - 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주차장
 - 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이동탱크 저장소와 상치장소
 - 바)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
- 3) 차량에 고정된 저장설비에 의하여 물질의 운반을 시작할 때 또는 운반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물질 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물질의 명칭·성질 및 운반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류를 운전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 5) 운반차량에 고정된 저장설비에 물질을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물질을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차량에 고정된 저장설비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저장설비 및 용기에는 안전밸

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성능이 그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 나)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저장설비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 다) 차량에 고정된 저장설비에 부착되는 밸브·안전밸브·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저장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 7)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운반설비에 물질을 저장할 때에는 당해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피견인자동차를 철도·케도상의 차량에 싣거나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나)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운반설비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다)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 8) 컨테이너식 운반 저장설비 외의 운반 저장설비에 있어서는 물질을 저장한 상태로 운반 저장설비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 9) 운반 저장설비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물질의 누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당해 저장설비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 10)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용기를 운반차량에 세워서 운반하여야 한다.
- 11) 운반차량은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12) 밸브가 돌출한 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 13)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를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 14)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판 등을 차량 등에 갖추어야 한다.
- 15) 운반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그 물질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 사항의 비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6)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가능한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 개시 전에 용기의 적재상황을 재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 17)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한 후 일단 정지하여 적재상황·용기밸브·로프 등의 풀림 등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8) 물질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19)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물질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며, 차량에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20)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그 물질을 수요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고, 물질을 보관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21)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 22)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 23) 운반용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물질을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을 동일 사업장 내에서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물질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할 것

- 나) 수납하는 물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물질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다) 고체물질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 라) 액체물질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 마)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물질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 2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23)의 기준(고체물질은 제외)을 따르는 것 외에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다음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1)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 (2)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출 등 이상이 없을 것
 - (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물질 또는 10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물질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 (나)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 나)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 다)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라)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마)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일 것
- 25) 물질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 26)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27) 운반차량에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상부의 운반용기가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차량 적재함 양옆면, 후면에 지지대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8) 물질 또는 물질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 29)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시간·속도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 30) 운반 저장설비(탱크로리)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가) 저장설비(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료 및 구조로 물질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 나) 압력저장설비(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저장설비를 말한다) 외의 저장설비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저장설비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 31) 운반저장설비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물질을 저장하거나 고체물질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 31)에 따른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이 20kPa 이하인 저장설비에 있어서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저장설비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 나) 방파판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 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운반저장설비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 라)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3) 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저장설비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저장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저장설비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측면틀

- (1) 저장설비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저장설비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물질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저장설비 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3) 저장설비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저장설비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 (4)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저장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나) 방호틀

- (1)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4) 운반 저장설비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5) 운반 저장설비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운반 저장설비에의 차량구동용엔진(피견인식 운반저장설비에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사고 예방·대응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고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 36) 피견인식 운반 저장설비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차량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견인부분에 작동유 탱크 및 유압펌프를 설치하고, 피견인부분에 오일 모터 및 펌프를 설치할 것
- 나) 트랜스미션(Transmission)으로부터 동력전동축을 경유하여 견인부분의 유압펌프를 작동시키고 그 유압에 의하여 피견인부분의 오일모터를 경유하여 펌프를 작동시키는 구조일 것
- 37) 운반 저장설비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운반설비로부터 물질을 토출하는 용도로만 하여야 한다.
- 38)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저장설비에는 다음에 따라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양도체(良導體)의 도선에 비닐 등의 절연재료로 피복하여 선단에 접지전극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clip) 등을 부착할 것
 - 나) 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39)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운반설비는 옮겨 싣는 때에 운반설비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나)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에는 운반설비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운반설비를 싣는 운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 운반설비를 차량의 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 40)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가)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 나)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물질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 다)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물질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라)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1)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 (2)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 (3)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 마)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1)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 (2)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3)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물질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2) 운반의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3)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44) 운반차량 내부 및 차량용 저장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피해저감

- 1) 차량에 고정된 저장설비 및 용기 운반차량에 그 용기 및 운반설비를 보호하고 그 용기 및 운반설비로부터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계 및 액면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액면요동방지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물질의 운반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 4)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주입구 주위에는 작업시 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운반차량은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6)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의 운전자는 운반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반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저장·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7) 운반차량 바닥 및 차량용 저장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마. 그 밖의 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반시설 및 설비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시설 및 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급시설에 대한 상세한 안전관리 지침서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6.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위치장소

- 1) 이송시설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이송 시설은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원이 되는 곳
 -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나. 배관밸브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지하가·터널 또는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음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다만, 다음 (2) 또는 (3)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적절한 누출 확산 방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 (1) 건축물(지하가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m 이상
- (2)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 (3)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물질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 300m 이상

나)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은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적절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마)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바)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cm(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10cm) 이상, 배관의 상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cm(자동차 등의 하중에 없는 경우에는 20cm) 이상 채워야 한다.

2)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이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배관[이송기지(펌프에 의하여 물질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내에 설치되어진 것은 제외한다]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안전거리를 둘 것

다) 배관은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할 것. 다만, 사고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

- 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차량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 마)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질 것
- 바)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할 것
- 3) 배관의 재료는 그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4) 배관의 구조는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5)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6) 배관의 접합은 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 7) 배관은 수송하는 물질의 특성 및 설치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가) 배관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 나) 관이음쇠 : 배관용강재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재 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허용차(KS B 1502), 강재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KS B 1511)또는 관플랜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 다) 밸브 :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
- 9)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 가) 물질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나)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 10)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11) 배관의 두께는 배관의 외경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외에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시하여야 한다.

배관의 외경(단위 mm)	배관의 두께(단위 mm)
114.3 미만	4.5
114.3 이상 139.8 미만	4.9
139.8 이상 165.2 미만	5.1
165.2 이상 216.3 미만	5.5
216.3 이상 355.6 미만	6.4
355.6 이상 508.0 미만	7.9
508.0 이상	9.5

- 12)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3) 배관등의 이음은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플랜지이음으로 할 수 있다.
- 14) 플랜지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고 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 지하에 설치한 배관등에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내구성이 있고 전기절연저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하여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塗裝材) 및 복장재(覆裝材)는 다음의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효과를 갖는 것으로 할 것

나) 도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아스팔트 에나멜,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

- 다) 복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비니론크로즈, 글라스크로즈, 글라스매트 또는 폴리에틸렌, 헤시안크로즈, 타르에폭시, 페트로라툼데이프, 경질염화비닐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열수축튜브, 나이론12수지
- 라)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방법,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할 것
- 16) 지상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17) 지하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전기방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물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방식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할 것
 - 나) 적절한 간격(200m 내지 500m)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 다)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등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강제배류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 18) 배관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19) 교체밸브·제어밸브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할 것
 - 나) 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 라) 밸브는 당해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 20)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나)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물질을 주입하거나 토출하는 호스 또는 배관과 결합이 가능하고 물질의 유출이 없도록 할 것
 - 다)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물질의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있다는 내용과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 라)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개폐가 가능한 밸브를 설치할 것

다. 사고예방

- 1) 이송시설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유해성이 높은 이송시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물질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 및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배관에는 그 배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이송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이송시설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이송시설에 설치한 밸브등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밸브등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업자가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가)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이송시설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밸브등(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등은 자물쇠로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 7)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8) 가연성물질의 이송시설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 9) 이송시설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이송시설을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높이 1.5m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는 증기의 체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부등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송기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취하여 시험할 수 있다.
- 14)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시험을 실시한 배관등의 시험구간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분 또는 수압시험을 위하여 배관등의 내부공기를 뽑아낸 후 폐쇄한 곳의 용접부는 13)의 비파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5) 배관계(배관등 및 물질 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펌프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16) 배관계에는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17) 배관계에는 다음의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압력안전장치·누출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그 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어기능
 - 나)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기능
- 18) 배관계에는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하 “압력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19) 압력안전장치는 배관계의 압력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 20)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1) 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출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에는 상용전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2)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접지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 23) 배관계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 24)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절연용 접속을 하여야 한다.
- 25) 파괴설비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6) 이송시설(물질을 이송하는 배관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파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 이송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28) 굴착에 의하여 주위가 일시 노출되는 배관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 이송기지의 구내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 피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물질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출한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피해저감

- 1) 배관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배관을 시가지·하천·수로·터널·도로·철도 또는 투수성(透水性)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출된 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관·철근콘크리트조의 방호구조물 등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출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이송하는 배관계의 점검상자에는 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 나) 배관계내의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물질의 누출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다) 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물질의 누출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라) 배관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물질의 누출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 누출검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출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배관에는 하천, 해상 및 해저, 산림지역, 도로,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이 없도록 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긴급차단밸브는 다음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가) 원격조작 및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되는 기능
 - 나) 누출검지장치에 의하여 이상이 검지된 경우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폐쇄되는 기능
- 7) 긴급차단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8) 긴급차단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점검상자 안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긴급차단밸브를 도로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긴급차단밸브는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 외의 자가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0)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안의 물질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 이송취급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2) 이송기지에는 당해 이송기지 밖으로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지경계선에 유해화학물질을 차단이 가능한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기준

- 1) 유해화학물질 배관이송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유해화학물질 배관이송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관이송시설 및 설비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 배관이송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급시설에 대한 상세한 안전관리 지침서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비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준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다른 특별한 기준이 없거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 취급시설·장비 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 바. 누출·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
- 자. 물질의 누출·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 차. 별표 5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

2. 기술인력 기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5)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개선투자 및 안전 환경 인력 채용을 확대한 경우
- 6)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 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위해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9)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5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7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9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차.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0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카.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파. 법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3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하.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4호	허가취소			
거.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5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러.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머.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9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누출 또는 도난·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0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서.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1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어.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2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터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1) 외의 경우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3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4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5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6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30일)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60일)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90일)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180일)		

[별표 8]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 (제42조제2항 관련)

- “공동활용계획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시설·장비 확인 등),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조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및 사용량과 1회 사용 시 소요시간(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과 업소별 사용시간의 원칙적 배정내역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보관·저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사용면적 또는 사용용량, 위치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잠금장치의 열쇠 보관관리 등 안전설비관리계획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반하려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성상별 일일운반소요량, 일일운반능력(대당운반능력×횟수×대수)과 운반차량의 업소별 활용시간배정계획, 세차 등 차량관리계획
-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는 공동활용 업소의 위치와 이동로 및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의 명세서로 같음한다.
-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에는 공동활용 내역,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공동대처방안, 대표업소의 선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한계 및 업무지원 내역(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부재 시 유독물 관리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내역을 기재한다.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의 독성가스는 제외한다).
- 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해당 물질을 인계인수한 때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인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질 종류 및 물질의 양을 기록하고 이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나.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하여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 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확인·기록하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보관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영상 장비를 설치하고 그 영상 기록물 등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다.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다음과 같이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저장·보관 시설, 진열·보관 장소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 라. 해당 물질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해당 물질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동의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바. 해당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단위: kg)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1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50-00-0	1,500,000	200,000
2	메틸 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0-34-4	300,000	10,000
3	포름산 (Formic acid)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4-18-6	1,500,000	20,000
4	메탄올 (Methanol)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7-56-1	1,500,000	200,000
5	벤젠(Benzene)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1-43-2	1,500,000	10,000
6	염화메틸 (Methyl chloride)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87-3	300,000	10,000
7	메틸아민 (Methylamine)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89-5	300,000	10,000
8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90-8	300,000	1,500
9	염화비닐 (Vinyl chloride)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01-4	1,500,000	200,000
10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15-0	300,000	10,000
11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21-8	1,500,000	10,000
12	포스겐 (Phosgene)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44-5	75,000	750
13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50-3	300,000	10,000
14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56-9	1,500,000	10,000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15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8-93-3	1,500,000	200,000
16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8-94-4	1,500,000	200,000
17	아크릴산 (Acrylic acid)	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9-10-7	1,500,000	20,000
18	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96-33-3	1,500,000	200,000
19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98-95-3	1,500,000	20,000
20	파라-니트로톨루엔 (p-Nitrotoluene)	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99-99-0	1,500,000	20,000
21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0-44-7	300,000	10,000
22	아크롤레인 (Acrolein)	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02-8	300,000	10,000
23	알릴 클로라이드 (Allyl chloride)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05-1	300,000	10,000
24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13-1	1,500,000	10,000
25	에틸렌디아민 (Ethylenediamine)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15-3	300,000	10,000
26	알릴알코올 (Allyl alcohol)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18-6	1,500,000	20,000
27	메타-크레졸 (m-Cresol)	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8-39-4	1,500,000	20,000
28	톨루엔 (Toluene)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8-88-3	1,500,000	200,000
29	페놀 (Phenol)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8-95-2	1,500,000	20,000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30	노말-부틸아민 (n-Butylamine)	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9-73-9	1,500,000	200,000
31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21-44-8	300,000	10,000
32	아세트산에틸 (Ethyl acetate)	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41-78-6	1,500,000	20,000
33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 (Ferric ferrocyanide)·황혈염 (Potassium ferrocyanide)·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000143-33-9	300,000	10,000
34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에틸렌이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51-56-4	1,500,000	20,00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584-84-9	1,500,000	20,000
36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630-08-0	300,000	10,000
37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Acrylyl chloride)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814-68-6	750,000	20,000
38	인화 아연 (Zinc phosphide)	인화 아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1314-84-7	300,000	10,000
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1338-23-4	750,000	10,000
40	디이소시아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디이소시아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4098-71-9	300,000	10,000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41	나트륨 (Sodium)	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440-23-5	30,000	1,000
42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염화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47-01-0	1,500,000	20,000
43	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64-39-3	150,000	1,000
44	암모니아 (Ammonia)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64-41-7	1,500,000	20,000
45	황산 (Sulfuric acid)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64-93-9	1,500,000	20,000
46	질산 (Nitric acid)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97-37-2	2,250,000	300,000
47	삼염화인 (Phosphorus trichloride)	삼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19-12-2	300,000	10,000
48	플루오린 (Fluorine)	플루오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2-41-4	150,000	1,000
49	염소 (Chlorine)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2-50-5	450,000	10,000
50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황화수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3-06-4	150,000	1,000
51	아르신 (Arsine)	아르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4-42-1	15,000	500
52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클로로술폰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90-94-5	300,000	10,000
53	포스핀 (Phosphine)	포스핀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803-51-2	15,000	500
54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옥시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0025-87-3	750,000	20,000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55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이산화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0049-04-4	150,000	20,000
56	디보란 (Diborane)	디보란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9287-45-7	75,000	750
57	산화질소 (Nitric oxide)	산화질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0102-43-9	75,000	750
58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니트로메탄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52-5	60,000	20,000
59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질산암모늄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6484-52-2	90,000	30,000
60	헥사민 (Hexamine)	헥사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0-97-0	90,000	30,000
61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과산화수소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22-84-1	90,000	30,000
62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3811-04-9	15,000	5,000
63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질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57-79-1	90,000	30,000
64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과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78-74-7	15,000	5,000
65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과망간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22-64-7	300,000	100,000
66	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ate)	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75-09-9	15,000	5,000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67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질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31-99-4	90,000	30,000
68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e)	사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44-8	15,000	500
69	염화시아안 (Cyanogen chloride)	염화시아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506-77-4	75,000	750

비고

-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제조·사용수량”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 “보관·저장수량”이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제46조제3항 관련)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 가.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명, CAS 번호, 분자식, 농도, 폭발한계, 독성값, 인화점, 발화점, 끓는점, 증기압, 부식성 및 취급량(연간 취급량, 최대 저장량) 등을 작성한다.
- 나.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는 일반정보, 위험·유해성 분류 및 표시정보, 물리·화학적 성질, 화재·폭발 특성, 안정/반응위험 특성,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취급방법, 사고대응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가. 취급시설의 목록은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동력기 계목록 및 명세,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나. 방제시설은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스크리버 및 플레어스택의 처리용량, 고정식 소화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방류벽 및 비상전원 등 사고예방, 대응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시설명, 위치 및 성능에 관한 기본사양과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다. 방제장비의 보유 현황은 사업장 내에 있는 개인보호장구, 휴대용 측정기, 유출차단 및 오염물 제거용 장비 등 유사시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종류, 수량, 성능 및 보관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가. 공정안전정보는 공정 또는 시설개요,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비정상 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 철구조물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도, 유틸리티 계통도, 도면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나. 공정위험성 분석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따른

분석기법 또는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방법을 채택하여 작성한다.

- 다.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은 취급설비의 정상 및 비상운전절차, 긴급상황에서의 공장가동중지의 권한 및 절차, 유틸리티 공급중단에 대한 비상운전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은 화학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작업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가.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은 화재, 독성가스 누출, 환경오염 등의 사고 대비 비상계획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전체 종업원과 환경안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계획과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나. 자체점검 계획은 취급시설의 사고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으로서 체크리스트나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 조직

- 가. 비상연락체계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담당자 및 연락처,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통제실 운영, 경보전달 및 사고신고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나. 안전관리 담당조직은 유사시 실제로 투입이 가능하고 임무에 맞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조직 및 공조 활동을 필요로 하는 외부기관 목록과 역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가. 유출·누출 시나리오는 사고 발생 최악의 시나리오와 사고사례, 공학적 표준을 고려한 실제 발생이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적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나. 응급조치 계획은 시나리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단 혹은 단계별 차단 절차, 내·외부 확산 차단 또는 방지 대책, 방제자원(인원 또는 장비) 투입 등의 방제계획, 비상대피 및 응급의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 범위를 작성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의 확인에 관하여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등 시설물의 위치도 및 명세, 주민 분포, 공작물·농작물의 위치도 및 명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영향 범위에 있는 환경매체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월별 평균 온도, 습도, 대기안정도, 풍향, 풍속과 지표면의 굴곡도 등 기상정보, 상수취수원, 토양 및 지하수, 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매체, 주변위험시설, 운송시설 등 외부위해요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구체적인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자체 방제능력의 확보계획, 지역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 체계, 방제비용 및 사고 복구계획, 사고복구의 방법 및 조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잠재적 사고 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작성한다.
 - 나. 취급시설의 유지보수 계획, 비정기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등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비고

1.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대상자가 아니고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호의 일부를 작성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위해관리계

획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사본과 제3호다목, 제4호, 제5호가목,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의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제2호가목, 제3호다목,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예방규정의 사본과 제1호, 제2호나목·다목, 제3호가목·나목, 제4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2]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종별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2.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4. 허가물질 허가 및 재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5. 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6.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7. 유독물질 수입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8.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8.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9.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10.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9,000원	7,200원
11.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9,000원	7,200원
12.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30,000원	27,000원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000원	18,000원
14.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신고	13,000원	11,700원
15.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13,000원	11,700원
16.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시설규모별 인건비· 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비고 : 수수료는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3]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장외영향평가서의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위해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착수 시 및 완료 시	지방환경 관서의 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	연 2회	조사 착수 시 및 완료 시	지방환경 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 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 을 포함한다)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신고 및 조치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권리·의무승계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화학사고 현장 대응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 관서의 장
화학사고 영향조사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 관서의 장
화학사고 조치명령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 관서의 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 관서의 장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협회의 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협회의 장

시행규칙 별지서식



[] 제 조
[] 수 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 조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 조 (수입) 제품명세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⑥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제조사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전화 및 팩스 전자우편		
⑦ 확인 내용	합유여부	있음			없음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유독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허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제한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금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조 [] 수입
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조(수입)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1부
작성방법	
1. “제조자”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자”란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하려는 자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2.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4.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⑤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7. ⑥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⑦란의 각 확인 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8.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 9. ⑦란은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 시하여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 질명, 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확인서	⇒ 접수 ⇒ 검토 ⇒ 결재
제출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

[] 제 조
[] 수 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확인신청 내용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유독물질 해당 여부 [] 허가물질 해당 여부 [] 제한물질 해당 여부 [] 금지물질 해당 여부 [] 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이 적힌 성분명세서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	---	--

작성방법

-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 ⑤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신청서	⇒	접수	⇒	검토	⇒	확인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인

[별지 제3호서식]

증명번호		[] 제 조 [] 수 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제 호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수입국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HSK No.			
주요용도			
확인신청내용(신청인)		확인내용(협회)	
확인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제시하는 관련 서류에 근거한 []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환 경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관보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려 합니다.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공개내용			
소명서 제출기한			

2. 만약 공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보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시고, 자료보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를 함께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정보공개 소명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① 소명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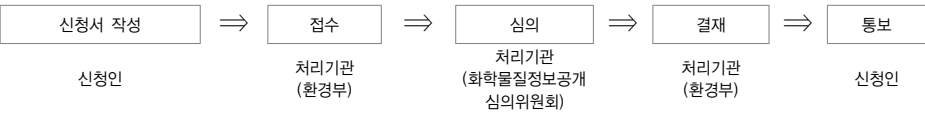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사항 및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2. 공개대상 정보의 자료번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통지번호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제 호				
정보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개 여부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내용				
공개 방법				
공개 시점		년 월 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 소명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①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명		진열·보관수량(kg)		방재장비 목록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란은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하는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증명서 발급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제출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증명번호		진열·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적정성 여부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진열·보관 조건				
취급시 주의사항				
방재요령	누출 시 :			
	화재 시 :			
	폭발 시 :			
비상시 연락기관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열·보관계획 등 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9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운반업체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운반차량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명		수량(kg)		휴대용 방제장비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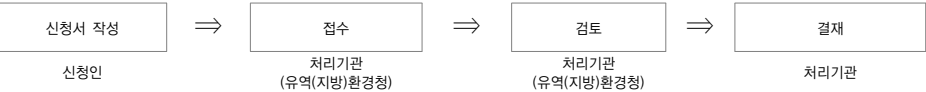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운반업체는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요청사항	화학물질명	
	중지 해제 요청 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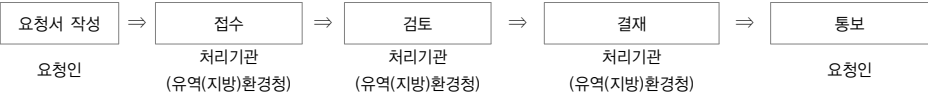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		
제 호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중지 해제		[] 수용 [] 부분 수용 [] 불수용		
중지 해제 내용 ※ 수용 또는 부분 수용시 작성				
중지 해제 시점 ※ 수용 또는 부분 수용시 작성		년 월 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금지물질

[] 제조
[] 수입
[] 판매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 용도		
	④ 연간 예정량	kg	
	⑤ HSK No.		
	금지물질 함유 내용	⑥ 명칭	
		⑦ 금지물질 번호 또는 CAS No.	
		⑧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 제조
[] 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 판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사용 · 판매 계획서 1부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작성방법

- ①란은 상품의 이름을 적습니다.
-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 ③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④란은 연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 · 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 ⑥란부터 ⑧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금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7. 앞 쪽 공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허가증 작성 처리기관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별지 제13호서식]

허가번호	금지물질			[] 제 조
제 호				[] 수 입 허가증
				[] 판 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조국(수입국)				
금지물질의 명칭				
연간 허가량		kg		
용도				
허가조건				
허가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물질의 [] 제조를 허가합니다. [] 수입을 [] 판매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년 월 일				

허가번호

제 호

금지물질

[] 제 조

[] 수 입

[] 판 매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 청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 제조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수입

[] 변경신고를 합니다.

[] 판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증 원본 1부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7,200원)
------	---	---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허가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적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작성

⇒

변경사항이 적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	---------------------	------	-----

☐ 허가번호 ☐ 증명번호		금지물질 ☐ 제조 ☐ 수입 ☐ 판매 ☐ 변경허가증 ☐ 변경신고증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금지물질의 명칭				
변경허가(신고) 사항				
용도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기 물질의 ☐ 변경허가증을 ☐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 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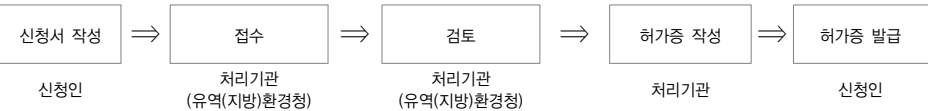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①란은 상품의 이름을 적습니다.
-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 ③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④란은 연간 제조, 수입 또는 사용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적습니다.
- ⑦란부터 ⑨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 앞 쪽 공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별지 제17호서식]

허가번호	[] 제 조		
제 호	허가물질	[] 수 입	허가증
		[] 사 용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조국(수입국)			
허가물질의 명칭			
연간 허가량		kg	
주요용도			
한정기간(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기 물질의 [] 제조를 [] 수입을 허가합니다. [] 사용을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 직인			

[별지 제18호서식]

[] 제 조

허가물질 [] 수 입 재허가신청서

[] 사 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① 허가번호			
	② 재허가(한정) 기간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제조

[] 수입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2.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위해성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대체 계획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증에 적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전 허가기간보다 짧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 용도	
	④ 수입 예정량	
	⑤ HSK No.	
	제한물질 함유 내용	⑥ 명칭
		⑦ 제한물질 번호 또는 CAS No.
⑧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1부(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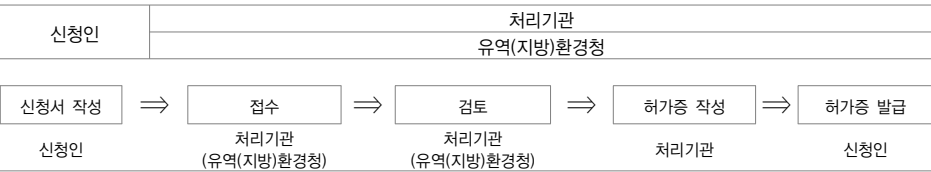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 ①란은 상품의 이름을 적습니다.
-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 ③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④란은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 ⑥란부터 ⑧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제한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 앞 쪽 공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허가번호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한물질의 명칭			
허가량		kg	
주요용도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별지 제21호서식]

제한물질 제 호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수입제품명(상품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 수입 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 수입 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작성방법		
앞 쪽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신고서) 작성 신청인 (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변경사항이 적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작성 처리기관	⇒ 변경사항이 적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신청인

[별지 제22호서식]

[] 허가번호 [] 증명번호		제한물질 수입 [] 변경허가증 [] 변경신고증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한물질의 명칭			
변경 허가(신고) 사항			
용도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 물질의 [] 변경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변경신고증을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용도			
④ 수입 예정량	kg		
⑤ HSK No.			
유독물질 함유 내용	⑥ 명칭		
	⑦ 유독물질 번호 또는 CAS No.		
	⑧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 ①란은 상품의 이름을 적습니다.
- ②란은 수입국을 적습니다.
- ③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④란은 수입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 ⑥란부터 ⑧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유독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 앞 쪽 공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고인

[별지 제24호서식]

확인번호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제 호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수입국			
유독물질의 명칭			
신고량		kg	
주요 용도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5호서식]

신고번호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 고 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수입제품명(상품명)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 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 증 원본 1부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증명번호 제 호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증	
신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유독물질의 명칭			
변경 신고 사항			
주요 용도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 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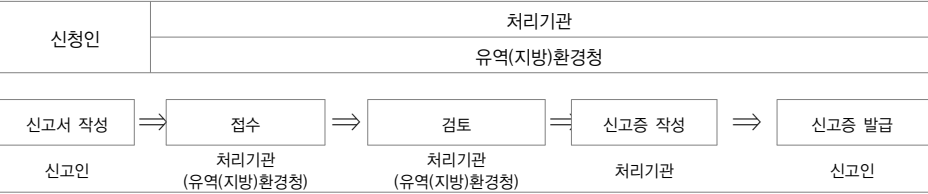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120g/m²]

작성방법

앞 쪽 공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수출제품명 (상품명)		
	② 주요용도		
	③ 해당 연도 수출 예정량	kg	
	④ HSK No.		
	⑤ 수입국		
	⑥ 수입자 상호		
	제한물질·금지물질 함유내용	⑦ 명칭	
		⑧ CAS No.	
		⑨ 함유량(%)	
		⑩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부 3. 수출자 책임보증서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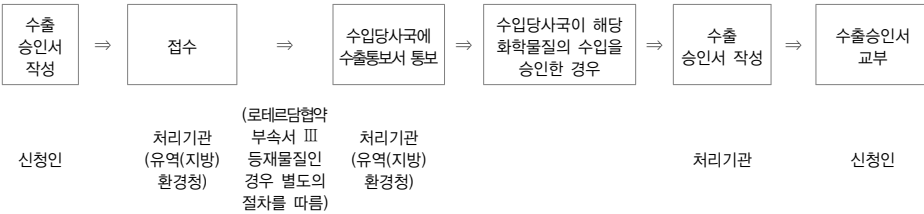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①란은 수출제품의 이름을 적습니다.
- ②란은 수출용도 등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③란은 해당 연도의 수출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④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 ⑤란 및 ⑥란은 수입국 및 수입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 ⑦란부터 ⑩란까지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제한물질·금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별지 제28호서식]

승인번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출제품명 (상품명)			주요용도	
해당 연도 수출예정량		kg	HSK No.	
수입국			수입자 상호	
제한물질·금지물질 함유 내용	명칭	CAS No.	함유량(%)	
유효기간		년 12월 31일까지		
유효조건		동일한 수출제품에 대하여도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따로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9호서식]

승인번호	[] 제한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	
제 호	[] 금지물질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수출제품명(상품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 제한물질의 []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출 승인서 원본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승인번호		[] 제한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
제 호		[] 금지물질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출제품명 (상품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결재 처리기관	⇒ 변경사항이 적힌 수출승인서 신청인

[별지 제31호서식]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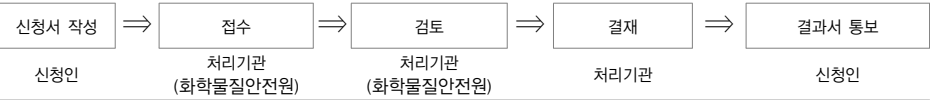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장외영향평가서 3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의 소량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2호서식]

검토번호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토대상 취급시설				
검토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첨부서류: 위험도 평가 상세내용 1부 적합여부 상세내용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3호서식]

요청번호		장외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토대상 취급시설				
서류 보완·조정 필요 사항				
보완·조정 서류 제출 마감일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첨부서류: 보완·조정 필요사항 상세내역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 취급시설			
	검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작성방법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는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유역(지방)환경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귀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2. 따라서 귀 업체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등)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붙임 : 수시검사 사유서 1부. 끝.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정기검사 [] 수시검사 결과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취급시설 [] 제조·사용시설 [] 보관·저장시설 [] 운반시설 [] 기타			
	취급 화학물질	명칭	연간취급량(톤)	주요용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정기검사
[] 수시검사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안전진단 대상 취급시설			
	검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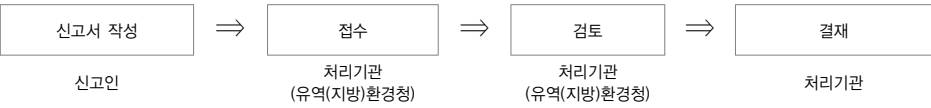
작성방법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서는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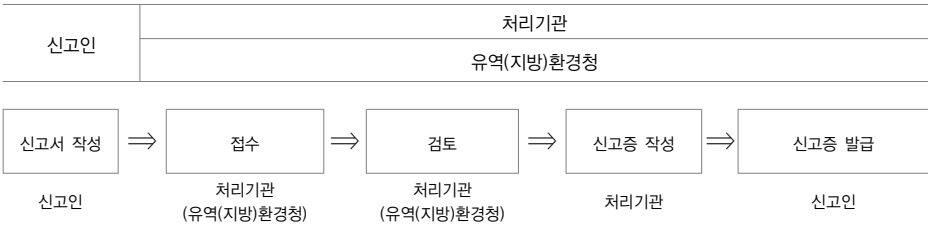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0호서식]

명령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보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개선명령 사항		
개선명령 이행결과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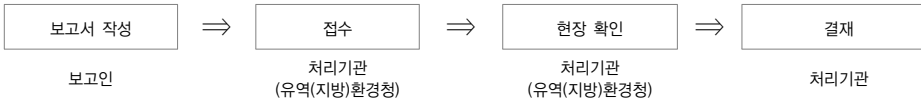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개선명령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제 호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가동중지 대상 취급시설 :
6. 위반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성명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 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 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비교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43호서식]

[] 제 조 업 [] 운 반 업
유해화학물질 [] 판 매 업 [] 사 용 업 허가신청서
[] 보관·저장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자가 [] 위탁 [] 임차		
	①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m ³
	종업원수		명	사업장면적	m ²
	④ 보관·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m ³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m ³
	⑥ 매출액(사업장)		억원		
	⑦ 주요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 량(m ³)	저 장 화 학 물 질	
			명 칭	1일 평균사용량	주 요 용 도
	⑧ 관리자공동 활용여부		[] 단독 [] 공동	⑨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⑩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1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3.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1부 6.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피상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수수료 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3. 후견등기부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②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 ③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적습니다.
-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적습니다.
- ⑥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⑦란은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적습니다.
- ⑧란 및 ⑨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 ⑩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제조 ☐ 보관·저장 ☐ 판매 ☐ 사용 ☐ 운반				
유해화학물질			제품명	용도	취급예정량 (톤 또는 m³)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월간	연간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연간 취급량은 월간 취급량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 제조업 ☐ 판매업 ☐ 운반업 ☐ 허가증 ☐ 보관· ☐ 사용업 ☐ 변경허가증 저장업			
신청인 (신분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자가 ☐ 위탁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명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m³	
종 업 원 수		명		사업장 면적 m²	
보관·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m³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m³	
전년도 매출액 (사업장)		억원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 량 (m³)	저 장 화 학 물 질		
			명칭	1일 평균사용량	주 요 용 도
관리자공동 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허가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제조업 ☐ 운반업 ☐ 허가 ☐ 판매업 ☐ 사용업 ☐ 영업을 ☐ 변경허가 합니다. ☐ 보관·저장업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46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허가신청서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 청 인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영업종류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변 경 사 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청인(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0,000원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18,000원)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허가번호 :
6. 변경신고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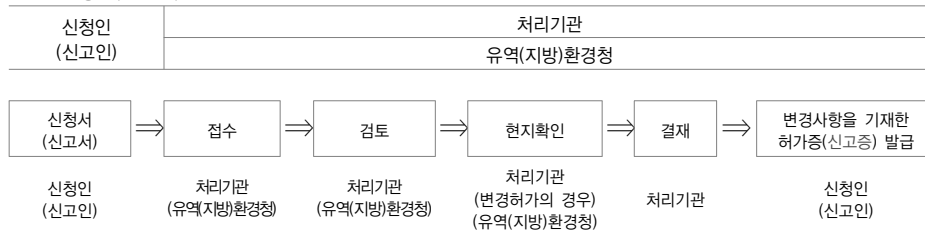
직인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급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 사항	도급 내용			
	도급 사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도급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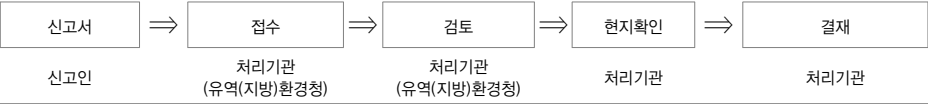
작성방법

- 1. 신청인은 신고를 하는 자를 적습니다.
- 2. 도급인은 실제 도급을 준 자를 적습니다.
- 3. 수급인은 실제 도급을 받은 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선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해임

[] 퇴직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개요	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연간 취급량			
	종업원 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수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 선임을

[] 해임을 신고합니다.

[] 퇴직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선임·해임·퇴직서 1부	수수료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1부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작성방법	
① 란은 유해화학물질 종류와 유해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① 연장 기간		
	연장 사유		
	업무 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선임기간 연장을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업무 대리자 이력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① 란은 30일 이내에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	접수	⇒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승인증 발급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승인 여부 : ☐ 승인 ☐ 불승인

6. 연장 승인기간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기간 연장 신청을 ☐ 승인합니다.
☐ 불승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허가번호

제 호

☐ 폐업
☐ 휴업
☐ 재개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종류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폐업예정일	년 월 일	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폐업 사유			
	휴·폐업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보유 여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 폐업·☐ 휴업·☐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수수료 13,000원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11,700원)
	3. 조치결과서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 호

개 선 명 령 서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 주소(사업장) :
- 위반 내용 :
- 위반 장소 :
- 위반확인 시간 :
- 개선조치 사항 :
- 개선조치 기한 :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내에 위반 내용을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첨부서류 : [] 개선조치 상세내역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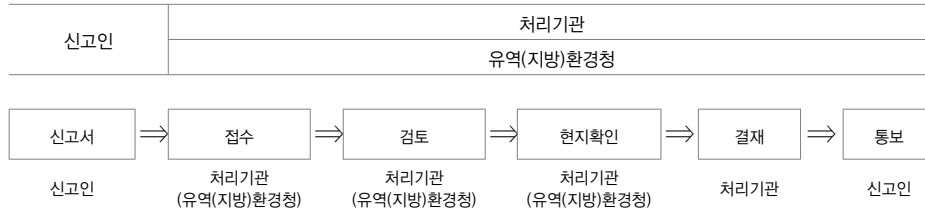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 · 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승계 사유		

신고사항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영업의 권리 · 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2. 권리 ·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3. 후견등기부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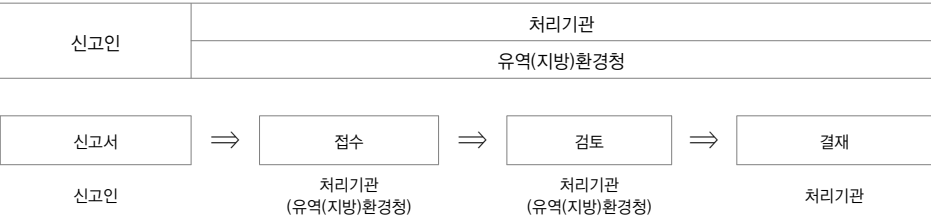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 관 리 자
[]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사항	대표업소명	(전화번호 :)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업소명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관 리 자
[] 취급시설 의 공동 활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활용계획서 1부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1부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1부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1부 ※ 위 첨부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필요시)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대표업소명	(전화번호 :)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업소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 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 취급시설

의 공동활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필요시)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고인
-----	---------------------	---------------------	------------------------------	------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적합여부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검토번호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토 대상 사고대비물질			
검토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첨부서류: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여부 상세내용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61호서식]

요청번호		위해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토 대상 사고대비물질				
수정·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 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첨부서류: 수정·보완사항 상세 내역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62호서식]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이 고지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사업장 대표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종류		
	유해성		
	사고 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영향 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경보 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m²]

00년 0월 0일, 00:00현재(최초, 중간, 최종)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1. 사고개요

- 가. 일 시: 년 월 일 시 분(요일)
나. 장 소:
다. 사고내용
○
라. 사고원인
○
마. 사고시설 현황(유발자 현황)
○

2. 피해상황

- 가. 인명피해: 00명(사망 0명, 중상 0명 경상 0명 등)
나. 재산피해:

3. 수습(조치)현황

- 가. 사고접수시간: 년 월 일 시 분(신고자 ○○○ → 접수자 ○○○)
나. 시간대별 수습(조치)사항

일자	시간	주요조치내용

- 다. 방제장비 등 동원현황
○ 동원인력: 00명(기관별 동원인력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동원장비: 00대(소방차·탱크로리 등 현장수습 활동에 동원된 장비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 방제장비
- 오일펜스·흡착포·유처리제·방제약품 등 그 밖의 장비·자재 동원 명세

4. 사고관리

- 가.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
○ 대기:
○ 수질: 수계 및 취·정수장에 미친 영향
○ 토양: 주변 주거지역 등 오염 현황 등
○ 주변 주거지역 주민 피해 현황
나. 사고지역 사후관리 활동
○ 오염토양 제거, 주민피해 보상 조치 등

5. 사고발생업소 조치

일자	관련법령	조치내용	조치기관

6. 사고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고발생 원인:
○ 재발방지 대책(향후 조치계획 등)

7. 기타

- 언론취재 여부 등

[비고]

1. 사고보고는 최초·중간·최종보고로 구분하되 최초보고는 사고발생 개요와 피해 현황을 정리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최종보고는 사고를 완전히 수습한 후 수습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며, 최종보고서에는 사고 유발자 등의 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 사고발생 원인, 사고지역 관리방법, 향후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조치명령 사항 :
6.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위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첨부서류: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5호서식]

명령번호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허가 업종		

조치명령 이행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조치명령 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66호서식]

명령번호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허가 업종		

조치명령 이행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조치명령 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조치명령 사항

6. 이행 완료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보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보고사항	실적 보고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보고인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년도분)					
허가번호: 제 호					
보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제한물질명	제한물질 함유량 (%)	수입량 (톤/년)	주요용도	제한물질번호 또는 CAS No.
합 계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년도분)					
신고번호: 제 호					
보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유독물질명	유독물질 함유량 (%)	수입량 (톤/년)	주요용도	유독물질번호 또는 CAS No.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한물질 · 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 (년도분)								
보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 · 승인번호		제 호		허가 · 승인일자		년 월 일		
보관 · 저장시설 현황		시설수			총용량			
사업장 경유하천		()						
제한 · 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제한물질 · 금 지물질명	함유량(%)	취급량 (톤/년)	주요 용도	제한물질 · 금지물질 번호 또는 CAS No.	상온 · 상압에서의 상태		
						고 체	액 체	기 체
합 계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 제조 [] 판매 유해화학물질 [] 보관 · 저장 세부실적보고(년도분) [] 운반 [] 사용									
보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제 호		등록일자		년 월 일		
보관 · 저장시설 현황			시설수			총용량			
사업장 경유하천			()						
유독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고유번호 또는 CAS No.	상온 · 상압에서의 상태		
							고 체	액 체	기 체
제한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고유번호 또는 CAS No.	상온 · 상압에서의 상태		
							고 체	액 체	기 체
사고대비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고유번호 또는 CAS No.	상온 · 상압에서의 상태		
							고 체	액 체	기 체
전체 합계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화학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 고 량	비 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수입· 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이월량	위탁인				연월일	위탁인				재고량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고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고량		

[별지 제77호서식]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운반량	출발지점	도착지점	차량번호	위탁인				비고
					상호(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78호서식]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					
연월일	출입시간 (00:00 ~ 00:00)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출 입 목 적

※ 외부인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자료보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자료보호 신청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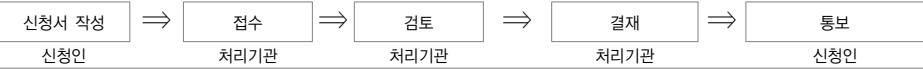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유역(지방)환경청장·협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1부 2. 보호 대상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통지번호			
	자료보호 항목			
	자료 보호기간 만료 예정일	년	월	일
	② 보호요청 연장기간	년	월	일까지
	보호요청 연장 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유역(지방)환경청장·협회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 검토 결과 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은 자료보호 신청시 화학물질안전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서 받은 통보서의 통지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자료보호기간 만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별지 제81호서식]

통지번호		자료보호 [] 신청 []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자료보호항목				
자료보호기간		년 월 일까지		
자료비보호 항목				
자료비보호 사유				
이의신청 기한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 [] 신청 [] 기간 연장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협회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